

서울시 및 타구 생활임금제 산정근거

□ 서울시 산정근거

▶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금액 : 6,687원

〈 산출내역 〉

〈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(서울연구원)〉

시급 6,582원 = [{(a) × 1/2 } + (b) + (c)] ÷ 365시간 ⇨ (월) 1,375,638원

① (a) : 가계동향조사 3인가구 지출값의 합계 3,276,726원
 - (a)값에 빈곤기준선(전국 평균지출의 50%) 적용한 1,638,363원

② (b) : 주거비, 최소주거기준(36㎡)을 감안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추정한 600,000원

③ (c) : 사교육비, 서울평균의 50%인 164,000원

↓

시급 6,582원('13년 연평균 기준자료로 산출)에 '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.6% 가산

시급 6,687원 = 6,582원 × (d) ⇨ (월) 1,397,583원

④ (d) : 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.6%

【통계자료 출처】

- (a) 전국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('13년 연평균, 통계청)
- (b) 주택전월세실거래자료('13년 말 기준, 서울시)
- (c) 서울 월평균 사교육비('13년 연평균, 통계청)
- (d)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('14년, 통계청)

【기본 가정】

- 서울시 평균가구원수는 약 3인임('10년기준 2.7명)
- 3인가구 : 1인(전일제 근로자, 월 209시간 근로), 1인(시간제 근로자, 월 156시간 근로), 1인(자녀)로 가정
- 3인가구 월 평균 가계지출의 50%미만 생활수준은 빈곤상태
- 전국 평균 가계지출에 서울 특성을 고려한 지출요소(주거비+사교육비)를 추가 반영

▶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의한 생활임금액 도출(최신 연평균 통계자료 : '13년 기준)

▶ 자료기준시점('13년)과 시행시점('15년)의 1년간 시차를 고려하여 '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(1.6%)을 반영 ⇨ '15년 생활임금기준액 산출

□ 종로구 산정근거

▶ 2015년 종로구 생활임금 적용금액 : 6,737원

〈 산출내역 〉

□ 생활임금기준액(월) 1,456,730원 → 시급 6,970 = [{(a) × 1/2 } + (b) + (c)] ÷ 365시간

- ① (a) : 2014년 가계동향조사 전국 3인가구 지출값의 합계 3,391,095원
- (a)값에 빈곤기준선(전국 평균지출의 50%) 적용한 1,695,548원
- ② (b) : 주거비, 최소주거기준(36㎡)을 감안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추정한 600,000원
- ③ (c) : 사교육비, 서울평균의 50%인 164,000원
- ④ 365시간 : 전일제 근로자 월 209시간, 시간제 노동자 월 156시간으로 가정

- 상기 자료는 '14.12월에 자료 확보가 가능한 전국가계동향조사자료('14.3분기 기준, 통계청), 서울지역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액('13년 기준, 서울시), 서울지역 사교육비조사자료('13년 기준, 통계청) 등을 토대로 작성

□ 도봉구 산정근거

▶ 2015년 도봉구 생활임금 적용금액 : 6,970원

〈 산출내역 〉

□ 생활임금기준액(월) 1,456,730원 → 시급 6,970 = [{(a) × 1/2 } + (b) + (c)] ÷ 365시간

- ① (a) : 2014년 가계동향조사 도시근로자 3인가구 지출값의 합계 3,560,400원
- (a)값에 빈곤기준선(전국 평균지출의 50%) 적용한 1,780,200원
- ② (b) : 주거비, 최소주거기준(36㎡)을 감안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추정한 600,000원
- ③ (c) : 사교육비, 서울평균의 50%인 164,000원
- ④ 365시간 : 전일제 근로자 월 209시간, 시간제 노동자 월 156시간으로 가정

- 상기 자료는 '14.12월에 자료 확보가 가능한 전국가계동향조사자료('14.3분기 기준, 통계청), 서울지역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액('13년 기준, 서울시), 서울지역 사교육비조사자료('13년 기준, 통계청) 등을 토대로 작성

□ 성북구, 노원구 산정근거

▶ 2015년 성북구, 노원구 생활임금 적용금액 : 7,150원

〈 산출내역 〉

①2013년 연간5인이상 상시고용노동자 평균임금	②평균임금의 50% (①×50%)	③서울시 생활물가 반영분 (①×16%)	④서울시 생활물가 반영분의 50%(③×50%)	⑤합계 (②+④)	⑥시급 (월209시간)
2,577,842원	1,288,921원	412,454원	206,227원	1,495,000원 (천원절사)	7,150원 (원절사)

- 상기 자료는 '14년 사업체노동력조사('13년 기준, 고용노동부), 서울시민복지기준마련('12년 기준, 서울특별시)